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3. 9. 8 선고 2022가단35759-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충남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김동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오세용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심평 담당변호사 김윤진

변 론 종 결 2023. 5. 12.

판 결 선 고 2023. 9.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① 피고 A과 B 사이에 2021. 8. 9.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② 피고 A은 B에게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21. 8. 9. 접수 제170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3. 3. 31. B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자녀로 C(D생)와 E(F생)를 두었다.나. B은 2020.

4. 2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의서(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본인은 2020. 3.경 발생한 'G다방과 H모텔(호)' 사건의 전적인 잘못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으로 이혼에 합의합니다. 유책행위에 대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본 협의서를 작성하며 협의이혼을 해주기로 약정한다. 본인의 유책행위에 대한 잘못으로 위자료와 아이들 양육을 위해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한다. 대신 아파트 대출금 이자 부담은 A이 하기로 한다.

다. B은 자신이 운영하는 J(주)이 K조합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2021. 3. 3.

기업의 채무보증 역할을 하는 원고와 사이에 J(주)의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

라. B은 2021. 8. 9.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아파트1) 를 증여하겠다는 취지의 협의서를 작성해 주는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피고 앞으로 2021. 8. 9.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와 B은 2021. 10. 12. 협의이혼하였다.

바. B은 2021. 10. 28.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가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앞으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행위가 정당한 재산분할의 범위 내의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하여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은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그리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2) 재산분할의 상당성 정도

가)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 인정재산: 아래 분할재산명세표와 같다.

소유자 등		순번	재산의 표시	재산의 가액 (단위: 원)	증거	인정근거
김 낙 준	적극 재산	1	이 사건 아파트 중 B의 1/2 지분	135,000,000	갑5, 7	
		2	충남 보령시 L 답 2977.8㎡ 중 B의 1/2 지분	36,000,000	을가6	부정행위가 발각된 무렵이자 협의이혼 직전에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한

소극 재산					것을 감안할 때, 이 부동산의 처분자 금을 B이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 이 타당하다.	
	3					
	소계		171,000,000			
	1	K조합대출금	108,192,882	갑5, 을가5	B과 피고는 2017. 11. 20. 이 사건 아 파트를 구입하면서 K조합으로부터 대 출을 받았다. 그 대출금이 그대로 잔 존하여 오다가, 협의이혼 이후 피고가 이를 전액 인수하였다. 협의이혼 당시 B의 소극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소계		108,192,882			
	B의 순재산(적극재산 - 소극재산)		56,177,268			
	피 고	적극 재산	1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의 1/2 지분	135,000,000	갑5, 7
			2			
			3			
소계			135,000,000			
소극 재산		1				
		2				
		소계				
피고의 순재산(적극재산 - 소극재산)		135,000,000				
B과 피고의 순재산 합계		191,177,268				

○ 불인정재산: 원고는 B의 소극재산으로 합계 138,583,960원(갑 제6호증)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함이 상당한데, 원고의 채무를 포함한 위 채무들은 B이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일방적으로 부담하거나 J(주)에 대한 입보를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또는 B과 피고가 혼인 중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는 재산분할로서 청산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나) 재산분할의 상당성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순재산은 191,177,268원이고, 그중 피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재산분할을 하였다. 피고와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신 위 아파트에 관한 B 명의의 대출금 역시 모두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였고, 특히 그 과정에서 피고 앞으로 위 대출금의 면책적 인수까지 이뤄졌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이 135,000,000원이나, 그 피담보채무가 108,192,882원으로 결국 피고가 재산분할로 취득한 순재산은 26,807,118원(= 135,000,000원 - 108,192,882원)이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B이 1993년부터 혼인생활을 하면서 자녀 2명을 낳아 키우다가 B이 공무원에서 퇴직한 이후부터는 경제생활이 순탄치 않았던바, 이에 피고가 가사 및 양육 외에 다른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무엇보다 B이 2020. 3.경 부정행위를 하여 피고에게 이를 시인하는 이 사건 협의서를 작성해 준 뒤 협의이혼을 결심하였고, 그 위자료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이전해주기로 하였던 점, ③ 또 B이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은 탓에 피고가 그 치료와 병원비까지 부담해야 했던 것으로도 보이는 점, ④ 피고가 B으로부터 재산분할로 받은 순재산은 전체 분할대상인 순재산의 약 14%(= 26,807,118원/191,177,268원 × 100) 정도에 불과한 점, ⑤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등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데, 피고가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이전받는 대신 위자료 등을 따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요소가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재산분할로서 상당성을 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그 결과 B이 채무초과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일반채권자에

제공되었던 공동담보에 부족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해행위라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관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보령시 동

(도로명주소) 보령시

-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의 표시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의 면적 : 73.8584㎡

-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보령시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32720.6분의 44.7080

- 위 부동산 중 피고 의 공유자 지분 2분의 1 -

- 이 상 -

1) 별지에 표시된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의 1/2 지분에 해당하는데, 이는 증여 이전 B이 보유한 지분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B이 보유한 지분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로 하여 표시한다.